**「신용거래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고객은 고객의 신용공여계좌의 순재산액(자산금액에서 부채금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새로운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9조 삭제 반영 | |
| **제7조(담보제공)**  ① ∼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라 받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 **제7조(담보제공)**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 개정 내용  및  협회 영업 및 업무규정  제3-10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 |
|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  1.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3항  개정내용 반영 | |
| **<별첨>** | **<별첨>** |  | |
| **<신 설>** |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 |
| 6. ∼ 10. (생략) | 7. ∼ 11. (현행과 동일) | 제6호 신설에 따른 호 이동 |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
| --- |
|  |

|  |  |  |
| --- | --- | --- |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생 략) |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
|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용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 ② < 삭 제 > |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
| ③ ∼ ④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항 이동 |